

眞正한 丁茶山 研究의 길 (六)

(아울러 茶山論에 나타난 俗學的 見解를 批判함)

天台山人

六, 丁茶山の 土地分配論

商工業이 發達되지 못한 □制□□의 □點이 土地制度에 잇슬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업는 것이다. 그래서 丁茶山도 「田政은 五十四□ 中에 가장 어려운 急先務라」(『牧民心書』 五十四□)하고, 「國家 最急者는 卽 田政이라」(『經世遺表』 地官戶曹第二)라고 하여, 우선 全朝鮮의 □□을 政治의 使官에 依하여 「八道」制에서 十二道制로 □하고 各□□의 分□ 가튼 것도 從來의 弊害를 慘迹하여 모다 變改하며, 또 □□의 制度도 民戶의 多少와 而□의 □□에 依하여 等歲을 난흔세 田積五百戶 되는 郡에서 三□戶 以上되는 郡까지 난흔 것이었다. 그리고 政治의 損失을 檢討코져 考□法을 嚴密히 할 것을 主張하였다.

茶山の 著述에는 到處에 田制에 關한 것이 가장 만음을 發見한다. 그 中에도 從來의 弊害에 等하여 理想的으로 建設하라는 新□은 □世□ 卷□之十二 以下 井田論, 邦田論, 井田□, □□일 것이다. 茶山の 土地制度 改革은 土地公有, 土地의 共同耕作을 主張하는 井田制의 施行에 있다. 이 井田制의 施行上 難點은

- 1, 「地□不便」.....地形地味가 고르지 못하여 平均 分配가 어려운 것.
- 2, 「民數無恒」.....田을 바들 人口數가 恒定되지 안혀서 즉시 分配에 □幾이 생기는 것.

等を 들엇다(井田論一).

「天下의 田이 長焉, 短焉, 斜焉, □焉, 稅焉, 鈍焉, 呵焉, □焉해서 數岬에 □者가 잇서서 句□로써 結하고 □倍으로써 會하고 昇□하고 研□한다.」(井田論二)할지라도 「내 밭이 적다, 내 밭이 크다」하는 個夫의 不平은 免하지 못할 것이다. 그럼으로

- 1, 「平衍한 땅에 나아가 畫地□□하니.....六尺을 步, 百步를 畝(□□各十

步),百畝를 夫(□□各十畝), 三夫를 屋, 三屋을 井(그 形은 井文과 같다). 이리
하야 四角平直하고 間架□正하게 하며」

2, 「所謂 長者, 短者, 斜者, 欄者, 銳者, 鈍者, □者, 喂者 等도」 그 廣幅에
依하야 一定한 尺度로 測量하야 九百畝를 모하 一井으로 한다. 그리하야 「天
下의 山□□沿을 모다 井字로 定하되, 定하기 쉬운 것은 定하고 定하기 힘드
는 것은 規하고 町하고 萊하고 □하야, 井田의 率으로써 升除하고 □袖하야 井
田의 總(표준)으로써 통한다. 그리하야 十□을 一通, 十□을 一成, 十成을 一
終, 十終을 □一田으로 하자는 것이다(井田論三).

그리하야 茶山은 그 「地官修制田制二(『經世遺表』十三)에서 一夫九畝圖, 一
井四澮四溝圖, 百井一成十澮圖, 百成一同十澮圖를 그려 川邊에서 시작하야
川流를 □, □垡(□)를 □로 하야 土地區分하는 圖式을 보여주었다. 考工記에
依하야 廣尺深尺을(畝) 廣二尺深二尺을 遂, 九夫를 井, 井間에 廣四尺을 溝,
方十里를 成, 成間의 廣八尺深八尺을 澮, 方百里을 洞洞 사이에 廣二尋과 深
二仞으로 된 것을 澮라고 한다는 것이다.

그러나 地勢의 如何는 이처럼 容易하게 土地의 區分을 許하지 않는 것이
다. 그런 때에는 溪□天作의 形勢에 依하야 溝澮를 進退시켜야 한다. 溝澮을
만들 때에도 그 地勢가 許치 않는 때에는 基局처럼 截斷치 못해도 그의 田
井面 □을 九山畝一로만 맨들면 그만이다.